

형사정책연구소식

KIC BULLETIN

통권 제54호

1999년 7·8월호

시 론

- 형사정책의 문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보환 2

논 단

-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책임연구원 장규원 5
-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효율성 평가 선임연구원 정진수 12
- 국제반부패회의와 부패방지노력 연구원 이상용 24

자 료

- 일본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선임연구원 정 완(역) 30

형사정책 주요동향 35

연구원 동정 및 관련분야 소식 41

새로 들어온 책 42

현상퀴즈 46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학에 관한 본격적 교과서 등장
사법시험 고득점에 든든한 길잡이
국내외의 최신 이론과 자료를 망라한 역작
국책 형사정책 전문연구기관의 10년간 연구성과 축약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刊

改 訂 版

刑 事 政 策

4 · 6배판 / 640쪽 / 25,000원

박상기 (연세대 교수)
손동권 (건국대 교수) 공저
이순래 (원광대 교수)

최근 형사정책학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형사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업과 수험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범죄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형사정책학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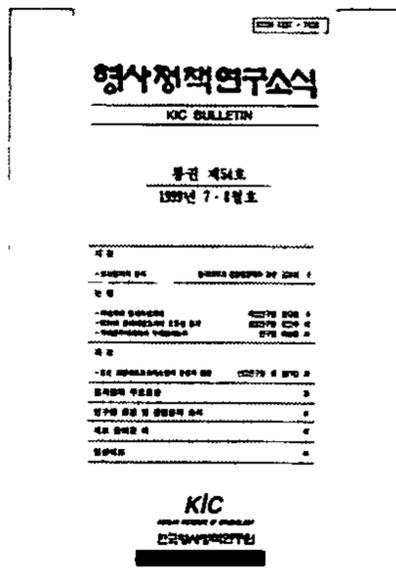
본서의 특징은 세 사람의 저자가 전공분야별로 가장 최신의 이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집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형사정책에 관한 전문·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0년에 걸쳐 출간한 250여건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우리 형사정책학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외국의 최신자료까지 참조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 - 140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TEL 571-0363, FAX 571-7488

www.kic.re.kr



형사정책연구소식

1999년 7·8월호 (통권 제54호)

시론

- 형사정책의 문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보환 2

논단

-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책임연구원 장규원 5
-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효율성 평가 선임연구원 정진수 12
- 국제반부패회의와 부패방지노력 연구원 이상용 24

자료

- 일본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선임연구원 정 완(역) 30

형사정책 주요동향 35

연구원 동정 및 관련분야 소식 41

새로 들어온 책 42

현상퀴즈 46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4호
 등록·1990년 9월 14일 마 - 1611
 발행일·1999년 8월 25일
 발행인겸 편집인·김경희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우편번호 137-715 전화 575-5282/9
 인쇄처·화신문화(주) 전화 2277-0624
 편집·출판실 / 전화 571-0363 / 비매품
 인터넷홈페이지 : www.kic.re.kr

ISBN 1227 - 7428

형사정책의 문제점

IMF의 엄청난 충격은 악화일로에 있던 우리나라의 범죄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려니와 질적양상의 변화가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인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조직폭력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대물범죄의 경우에도 양적증가는 물론 질적으로 대단히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증가의 지

표로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은 교정시설의 일일평균 재소자 수인데, IMF금융위기 이전에는 귀결수, 미결수를 합친 교정시설내 재소자 수가 일일평균 55,000명 정도이던 것이, 지금은 무려 70,00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교정활동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사회의 조건에 하나가 범죄없는 사회이다. 그래서 어느 고장에 가보면 “범죄없는 마을”이란 팻말도 있지 않은가? 범죄가 많다는 것은 사회질서가 없음을 의미하며, 범죄의 증가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게



김보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하여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형사정책적 이념은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형벌적 이념(Punitive Ideology), 치료적 이념(Therapeutic Ideology), 예방적 이념(Preventive

Ideology)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회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형사정책 이념이 변화하여 왔고, 이들 이념에 근거하여 형사정책의 구체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형사정책의 고전주의 시대에는 형벌적 이념이 지배적이었고, 실증주의 시대에는 치료적 이념이 형사정책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실증주의에 의한 치료적 이념이 형사정책의 주류를 이루면서 한편으로 예방적 이념이 등장하여 형사정책상 개인적 훈련이나 치료는 물론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에 와서는 범죄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사상이 고전주의로 회귀하면서 형벌적 이념이 형사정책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형벌적 이념은 과거 지향적이며, 그 주된 목적은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장래에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난 날에 어떤 일을 하였느냐와 관련해서 판단되고 평가된다. 그리고 범죄는 단순히 악한 범죄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범죄통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형

벌을 강조하며, 범죄통제에 대하여 강경노선의 접근방법을 택하게 된다. 만일 형사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정시설에의 구금에 의한 재정경비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스콜러(Daniel Skoler)같은 학자는 강제적 구금에 의한 엄청난 재정경비를 지적하면서, 형사정책은 범법자의 준법행위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준법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범법자의 동기와 자원을 개발할 것, 그리고 범죄통제프로그램을 사회체제로서의 지역사회의 몫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치료적 이념은 미래지향적이지만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범죄자로서의 인성과 행위 능력, 그리고 행위자의 환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치료적 이념에 의하면 범죄자의 이미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빈곤한 범죄자의 이미지로 사회 경제적 혹은 심리학적 영향력에 대한 범죄자의 취

약성을 강조하여 사회체제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 적응된 범죄자의 이미지로 범죄자의 비정상성 혹은 비기능성을 강조하여, 개인의 교정과 치료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어떠한 이미지로 범죄자를 보든 치료적 이념의 범죄통제 방법은 치료 그 자체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마크 앙셀(Marc

형사정책적 이념은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형벌적 이념(Punitive Ideology),
치료적 이념(Therapeutic Ideology),
예방적 이념(Preventive Ideology)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형사정책적 이념유형에 근거하여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어떤 이념유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형사정책은
과연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당면한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Ancel)같은 학자는 치료적 이념에 근거해서 ① 형벌의 사용을 넘어선 사회보호에 대한 관심과 ② 인간에 대한 존중 즉 인본주의, 그리고 ③ 개인의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한 욕망 등을 주창하였다.

끝으로 예방적 이념은 가까운 장래나 미래 지향적이며 형벌이나 치료와 같이 사후 대책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형사정책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로 특징지워진다. 장래에 무엇인가 악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와 일종의 계획적인 행동이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의 결과를 예고하고 그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예방적 이념은 다른 이념들과 중복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이나 정신건강치료와 같은 예방적 프로그램은 치료적 이념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형사정책적 이념 유형에 근거하여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어떤 이념유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형사정책은 과연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당면한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치료적 이념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치료·교화·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선진국이 걸어온 역사적 과정을 답습하는 듯한 인상이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이 범죄를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예방적 이념이 등장하고, 어느 정도 고전주의적 형벌주의로 회귀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시행착오를 초래할 뿐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제적 범죄통제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범죄통제를 위한 형사정책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범죄증가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White Collar범죄와 같이 합리성을 띠는 지능적인 범죄의 증가가 그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합리성을 띤 범죄행위는 자유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고전주의적 형벌정책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범죄가 합리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된 형사정책으로 모든 범죄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의 유형과 범죄자의 특성 또는 범죄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범죄자를 무능화하기 위한 형벌적 범죄통제정책과 교화·치료적 범죄통제정책을 병행하되, 예방적 차원에도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범죄통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형사정책이 선진국의 역사적 과정을 답습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1. 머리말

범죄학과 피해자학은 모두 형사사법체계의 적용 또는 운용에 대한 고찰이 그 주요 연구대상이다(장규원, 1999). 즉 범죄학자들은 형사사법체계(수사당국, 교정당국 등 법집행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들은 그러한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 정확히 말하면,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처우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반면에 피해자학자들은 그러한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들을 대우하는 방법을 조사한다. 특별히 피해자학자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 대응하는 방법, 검사·변호사, 그리고 판사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방법, 교정공무원들이 피해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피해자학에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와 같은 단계적인 연구에서 제기되는 또는 제기하여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피해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대우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사사법체계와 달리 소년사법체계에서는 다른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고(이윤호, 1991), 소년 피해자들



장 규 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은 그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선택권도 권리도 거의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더욱 열악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준호외, 1991 참조). 여기서는 일반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의 관계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피해자의 측면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각 단계별 조명은 후일(後日)을 기대하고자 한다.

2. 피해자의 시각에서 본 형사사법체계상 문제점

형사사법체계는 모든 측면에서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적인 견해에서나 자유주의적인 견해 그리고 급진적 경향을 가진 피해자학자를 비롯하여(장규원, 1999), 여성주의자, 시민단체 또는 인권단체(법질서수호이념의 지지자, 시민권 옹호자 그리고 시민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자) 등 모두는 형사사법체계의 규칙과 절차들을 비난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기관을 통제하고 일상업무의 지침을 정하는 공무

원들조차도 변화를 요구하는 비판자들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Karmen, 1995): ① 형사사법체계가 범죄피해자들과 증인들을 대우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쁘게' (badly) 이다(James Reilly, Director of the Victim/Witness Assistance Project of the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② 위협적인 범죄들의 형태는 무기를 사용한 특수강도에서 가벼운 절도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한 가지 범죄(?)가 있다. 그것은 어떤 보호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범죄이다. 그 범죄는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그 범죄란 바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무관심이다. 이러한 냉담함으로 인해 형사사법체계가 이미 가해자에 의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비통한 일이다(John Heinz, Sponsor of the Omnibus Victims Protection Act). ③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협조 없이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협조를 실제로 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형편없이 균형을 잃은 채 한 체계의 부속(기관)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가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는 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호하기로 되어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체계에 협조하는 과정 중에 그 체계는 피해자들

을 제도화된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피의자·피고인에게나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범죄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Lois Herrington, Chairperson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형사사법체계가 의뢰인 또는 소비자인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가 강도를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형사사법체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급히 달려가서 필요한 신체적·정신적인 일차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신속하게 훔친 물건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검사는 피고를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죄가 확정된 후에 검사는 피해자의 입장이 완전히 진술되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는 정의가 진정 실현되기를 바라는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당국은 보호관찰 대상자, 죄수, 또는 가석방자가 법원이 명령한 응분의 형을 정해진 대로 치르는가와 고소를 제기한 자를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자들과 그들의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 검사, 법원과 교정당국 사이의 관계가 협조적이기 보다 갈등적인 경우가 보통이다. 다음은 미국의 범죄피해

자에 대한 대통령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범죄피해자의 일상적인 경험에 관한 증언(Karmen, 1995)들을 기초로 구성된 피해자의 제2차피해자화(이에 대해서는 장규원 역, 1999)의 상황을 그려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사건이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진행중인 강간당한 한 여성의 곤경을 내용으로 한다(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1982: 3-11).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과 경찰, 검사, 피고측 변호사, 그 사건을 맡은 판사,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 그리고 교정당국과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 범죄상황 : A는 30세의 독신 여성이다. 어느 날 밤 자고 있을 때 A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놀라서 깨어난다. A가 소리치기 시작하자 그는 A를 때리고 칼로 찌른다. 그 다음에 A를 성폭행 한다. A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는 집을 뒤지고 보석, 귀중품과 돈을 빼앗았다. 그는 거칠게 행동하면서 가구와 창문들을 부순다. 포악한 행동을 그치고 난 후 그는 전화선을 뽑아 버리고 다시 A를 협박하고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A는 겁에 질려 집 근처 불이 켜져 있는 이웃에게 달려간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A는 그 침입자가 만일 경찰을 부르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을 생각한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한다. 경찰은 질문하고, 적고,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는다. A가 성폭행의 사실을 말하자, 병원에 데려 간다. 칼에 찔려 피가 나고, 앞니는 몇 개나 부러지고,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는 A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는 외상뿐이고 성폭행 자체는 상해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치료를 기다리면서 A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참으면서 혼자 수시간동안 앉아 있다. A는 불결하고, 마음이 상하고, 흐트러진 옷매무새에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A는 옷 등을 증거로 남겨 두고, 병원의 가운을 입은 채 자비(自費)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된다. 그 침입자가 손을 대던 것은 모두 불결해 보인다. A는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이 무척 두렵다. 항상 안전한 곳으로 느꼈던 유일한 이 장소는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A는 보호되지 않은 채로 공포에 떨면서 남아 있다. A는 언제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었는지 의식하지도 못할 것이며, 그것은 경찰보고서를 통해 언론과 피고소자에게 넘겨질 것이다. A의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 신문에서 이 사실을 알았으며 텔레비전에서 A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전화들은 피고와 그 친구들의 협박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A는 A를 성폭행한 자가 체포되었지만 구치소에서 그는 자유롭게 감시 없이 전화를 걸 수 있음을 알고 놀란다. 그는 구치소에서 A를 협박할 수 있다. 판사는 그에게 A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A는 우연히 거리의 모퉁이를 돌다가 가해자를 만난 다음에야 그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A가 사는 곳을 안다. 더욱이 A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그가 보는 신문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알 수 있다. 이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가해자는 맞은 편 거리에서 A를 보고 있거나 A와 같은 버스를 타고 A를 따라 간다. 그가 밤에 또다시 나타날까? A는 어떻게 할까? 집을 두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까? 직장을 잃게 될까? 다른 이름을 만들까? 우편물들을 우체국에 가서 직접 받을까? 무기를 가지고 다닐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가?

(2) 피고를 상대로한 고소제기 :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초등수사가 시작된다. 가해자는 무장침입절도, 강도, 그리고 강간죄로 고소된다. A는 그의 처벌을 기대한다. A는 예심을 위한 소환장을 받는다. 아무도 A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예심이 있기 전에 피고측 조사자가 A와 이야기하려고 온다. A를 만나서 “당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의도한대로 A는 그가 경찰이나 검사사무실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A는 그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야 그가 피고소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자는 A의 이웃과 직장동료를 방문하여 A에 관해 물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피고측에서서 그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A를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돌연 A에게 일어난 일과 그 이유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심일이 되었다. A는 이전에는 법원에 가본 적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 A는 예심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A는 나중에야 재판기

간에서보다 예심에서 답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종종 더욱 힘들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증언하는 동안 A는 계속해서 당신의 직장이 어디인지,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을 보내는지에 대답하도록 강요받는다. 수 시간에 걸쳐 범죄상황을 자세히 상기한 후에야 A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 A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낀다. A는 허죽 허죽 웃고 있는 피고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가 협박했던 것을 설명하자, 그 가해자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맞고소를 제기한다. A는 이들 관심도 없는 낯선 자들 앞에서 울고야 만다. A가 법정에서 나갈 때 누구도 A에게 위로도 하지 않는다.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다. 이제 사건에 대한 재판일정이 잡힌다. 그리고 계속 연기된다. A는 주기적으로 소환된다. A는 직장을 결근하게 되고, 기다리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온다. A가 가족모임에 참석할 생각으로 다음 출석일을 1주일 후로 정하기를 요청하면, 법원은 피고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피고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방문하여 묻는다. 당신의 진술을 변경할 것인가?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는가? 시간이 지나도 당신은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다. A가 잃어버린 재물은 아직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A는 재판에 이르기 전에도 피고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3) 재판 : 마침내 재판일이 되었다. A가 범행을 당한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다. A는 이 날을 위해 1주일 동안 준비하였다. 그날

의 테러를 당시 생각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A는 이 재판의 결과가 A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검사는 A에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너무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 배심원이 A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울어서도 안 되는데, 너무 감정적이거나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이란다. 범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A는 연기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측은 A를 거짓말쟁이와 남자를 유혹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로 만들기 위해 갖은 수를 쓴다. A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대답하지 말아라. 질문을 이해 못하는 A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도 당황하지 말라. 계속 생각해라.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며, 자청하지 말아라. 지쳐서는 안 된다. 마침내 A의 악몽은 끝났다. A는 앉아서 결과를 지켜보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다. 증인이기에 밖으로 나와야 한다. 배심원들이 A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A는 판결의 지침이 되는 증언을 들을 수 없다. 판결의 결과는 유죄이다. 이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4) 형의 선고 : A는 자신이 당한 범죄의 끔찍한 정도만큼 형벌이 부과되기를 기대한다. A는 검사에게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일단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보호관찰 담당자와 면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고는 입증된 사실에 대해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

한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의 인척과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판사들은 피고를 완전한 심리와 사회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보낸다. A는 그 누구도 피해자인 자기에게 범죄에 대해서나, 범죄의 피해가 A와 그 가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누구도 A에게는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형을 선고할 때 판사는 피고, 피고의 변호사, 어머니,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친구들의 진술을 듣는다. 판사는 범인에게 3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A가 당한 고통의 매 시간당 1년에도 못 미치는 처벌이다. A에게 그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후에 A는 가해자가 양호한 수용생활을 이유로 실형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된다. A의 집에 침입하여,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물건을 훔쳐간 그 남자는 얼마되지 않아 교도소를 나올 것이다. A는 언제 그가 방면되었는지를 듣지 못하며, 그리고 가석방심사에 참석하는 것도 허락 받지 못한다.

3. 피해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처벌, 치료 아니면 원상회복?

어떠한 이유에서 피해자들은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기를 요구하는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의 단계마다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기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왜 형사사법과정의 중요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기를 주장하는가?

피해자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목적 중에

하나 또는 부분적 결합을 추구한다. 첫 번째는 범인이 처벌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원이 범죄인에게 치료를 명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법원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처벌이다. 판사들은 대부분 처벌에 따르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즉 누구를, 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으로 처벌할 것인가?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이유들은 다를지라도 항상 서로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은 언제나 필요악이라는 공리주의를 기초로 하여 정당화된다(김완진·송현호·이재율, 1996: 31).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래의 범죄를 억제한다고 주장된다. 불유쾌한 결과를 경험한 범죄자는 교훈을 하나 습득하고 다시는 범법하지 않도록 억제된다(특별예방). 또한 똑같은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장래의 범죄인에 대한 경고에 적절하다(일반예방). 징역형은 위험한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범죄자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결백한 자일 수 없다. 국가에 의한 처벌의 또 다른 이론적 근거는 국가가 분노한 피해자들과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스스로 경계하는 것을 해소시킨다는 것이다. 처벌은 또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조치로서 정당화를 찾을 수도 있다. 응보형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에 비례하여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 구약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눈에는 눈...”이라고 상징되는 탈리오

의 법칙의 효과를 믿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때, 응보는 불균형을 바로 잡고, 잘못을 보상하고, 그리고 도덕적 명령의 우위를 회복시킨다.

형벌의 역사는 응보(즉, 복수)를 추구하면서 발전되어왔다. 복수의 환상은 사람들을 참고 견디도록 하고 그들에게 사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기조차 한다. 그러나 복수의 열망은 피해자들을 강박관념에 빠트려 그만큼 파괴시킬 수 있다. 복수를 했을 때에도 복수심은 생각했던 것만큼 충족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에 대해 분노감을 가지는 피해자들 역시 인간이다. 범죄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겠다는 생각은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기조차 한다. 그러나 끝없고 필요 없기조차 한 복수심이 고질적으로 관념을 사로잡는 경우 피해의식도 오래 간다.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들은 결코 가해자들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범죄피해자들은 최선의 복수는 범죄자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그 경험을 잊고, 그리고 생활에 충실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오늘날 처벌이 피해에 대한 대책과 범죄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적 제재는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고 격렬하게 비판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만으로 확실히 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범죄자들을 일정 수준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요구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 전혀 모르지 않는 연인, 가족, 친인척, 이웃, 급우, 또는 동료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에 복귀되기를 바란다. 사회복귀는 카운슬링, 행동수정 (behavior modification), 집중적인 심리치료,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 (additional schooling),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마약중독의 치료, 그리고 기타 치료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무 것도' 사회복귀사상을 각성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한 회의주의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형사체계의 임무의 일부로서 남아 있다. 사회복귀는 피해자들과 사회 모두에 대해 각각 한층 진보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전략이다. 자유박탈에 의한 무력화(incapacitation)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고 그릇된 감정만을 증진시키는 단기적인 전략이다. 피해자들은 교정의 기대효과와 달리 범죄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고도의 반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는 경우, 대단히 분노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이나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중에 있는 경우에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행하여지는 헛수고들에 대해 실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응보나 사회복귀보다 원상회복을 원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법체계가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청구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완전한 복귀의 필수조건인 범죄자에 의한 원상회복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재정상태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조정(reconciliation)은 일단 범죄자들이 금전적으로 배상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punishment), 범죄인들을 위한 치료(treatment), 또는 자신들을 위한 원상회복(restitution)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건 간에 형사사법체계가 범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관심부족 내지는 무관심, 권한의 남용, 또는 사안의 조작 등이다.

참고문헌

- Karmen, A. (1995).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1982),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김완진·송현호·이재율 (1996).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1990).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서울: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희 (1991).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 역 (1999). 피해자학입문, 서울:길안사.
- 장규원 (1999).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효율성 평가

1.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효율성에 관한 논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¹⁾에 의한 감시는 은행, 지하철, 백화점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장, 교도소, 학교, 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소규모의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넓은 지역의 공공장소에까지 CCTV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CCTV에 관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CCTV는 범죄를 실제로 감소시키는가(범죄예방효과가 있는가)? 보안을 이유로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CCTV의 효과 내지 효율성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²⁾

CCTV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CCTV에 의해 수사기관의 감



정진수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시능력을 강화하고 범죄를 범함에 있어서 체감하는 위험(risk)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순찰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상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CCTV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고, 노상범죄(street crime)의 억제와 노상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처벌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CCTV에 의한 감시 효과가 지나치게 강력하여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제한적으로 침해하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경찰이 감시하는 경찰만능의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CCTV의 활용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뿐이라고 한다.

CCTV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effectiveness)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그

1) 보통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약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Ray Surette, Media, Crime, and Criminal Justice: Image and Realiti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A Division of International Publishing Inc., 1997, pp. 174-175.

리 많지 않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로서 1970년대 영국의 지하철에서 CCTV의 설치효과에 관한 것이 있다. 조사결과 비록 절도가 카메라가 없는 인접 역으로 이동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카메라의 설치 이후 절도와 강도의 발생이 감소되었다.³⁾ 그리고 CCTV의 설치 초기에는 효과가 컸지만 곧 범죄자들은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즉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으면 초기의 억제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리고 도심지 상가지역의 교통신호등위에 설치된 CCTV의 효율성에 관한 한 연구에서 감시되는 지역에서는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된 범죄가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CCTV의 효율성 내지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크게 보아 'CCTV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과 'CCTV는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라는 상반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CCTV의 설치·운영

에 대해 아직 그 효율성에 대한 합의나 검증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만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평가과정에서 실로 고려하기 어려운 많은 난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능한 연구자들조차도 아직 누구나 납득할 만한 만족스러운 연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Tilley는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하기 어려운 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⁶⁾

1) 범죄율의 변동: 일정기간중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범죄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범죄율이 높은 시기에 평가를 시작하면 실제로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더라도 그 설치 이후 범죄율이 떨어지게 된다. 즉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반대로 범죄율이 매우 낮을 때에 평가를 시작하면 CCTV의 설치 이후 범죄율이 떨어지기 어렵고, 그 결과 CCTV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조사대상 지역에서의 범죄율의 변동외에도 범죄율의 일반적인 변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러나 CCTV설치 이후 설치지역내 전체적인 범죄율은 약 21% 감소하였으나, 상점절도 등의 범죄가 인접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Jason Ditton, Emma Short, Evaluating Scotland's First Town Center CCTV Scheme, Clive Norris, Jade Moran, Gary Armstrong ed, Surveillance, Closed Circuit Television and Social Control, 1998, p. 162.

4) Mayhew et al, Crime in Public View, Home Office Research Study no. 49.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9, pp. 25-26, 28.

5) Surette, Video Street Patrol: Media Technology and Street Crim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3, 1985, p. 83.

6) Nick Tille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CTV Schemes, Surveillance, Closed Circuit Television and Social Control, 1998, pp. 142-143.

2) 치환(displacement): CCTV가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완전히 포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나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범죄자들이 범죄의 종류나 범죄수법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에서 외부로 치환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외부에서의 범죄예방활동에 의해 조사대상지역으로 치환될 수도 있다.

3) 범죄예방활동의 일부로서의 CCTV: CCTV는 종종 다른 범죄예방활동과 병행하여 활용된다. 그리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상이한 요소들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4) 범죄 보고와 기록 형태의 변화: 모든 범죄가 보고되지 않으며, 보고된 모든 범죄가 기록되지 않는다. CCTV가 설치되기 전에는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았을 범죄들이 그 설치후에는 보고되거나 기록될 수 있다. 범죄데이터가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범죄 보고와 기록 형태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5) 이익의 확대: CCTV가 설치되면 소위 '이익의 확대(diffusion of benefits)'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범죄자들이 CCTV의 대상범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6) 대상지역내에서의 그밖의 변화: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간동안 대상지역내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CCTV외에 범죄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변화들을 고려하기 어렵다.

2. CCTV의 효율성 평가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CCTV의 설치와 범죄율의 변화간에 고정된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Tilley는 CCTV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거나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CCTV가 설치되는 상황은 다양하고, 이에 따라 CCTV가 효과를 가지는 방법도 다양하게 되며, 따라서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빈번히 제기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지불되고 있지만 그리 유용하고 지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오히려 'CCTV가 범죄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보다 현실적이고 답변이 가능한 질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난점들 때문에 어떤 연구도 CCTV가 범죄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거나, 혹은 그 반대 입장에 대해 사람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CCTV가 경우에 따라 범죄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 긍정해도 좋다고 한다. 즉 'CCTV는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CCTV가 범죄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아무 곳이나 설치되어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CCTV의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CCTV가 설치된 많은 경우에 범죄당 예방비용이 지나치게 높은지도 모른다. CCTV 이외의 방법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부작용을 적게 수반하면서 동일한 범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의 이익을 능가하는 유해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CCTV의 설치후 경비원들이 과도하게 해고되거나, 경비원들이 CCTV에만 의존하여 경비를 게을리하여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CCTV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CCTV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방법론상의 문제로 귀착된다.

Tilley와 Pawson의 소위 '실재적 평가방법(realistic evaluation)'은 CCTV의 효율성에 보다 우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는 범죄예방활동은 고유한 환경(context)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특정한 결과(outcome)를 낳기 위하여 어떤 메커니즘(mechanism)이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여기서 환경이란 범죄예방활동이 효과를 가지는데 필요한 조건과 관련되고, 메커니즘은 범죄예방활동이 효과를 낳는 방법에 관련되며, 실제적 결과(outcome patterns)는 주어진 환경속에서 범죄예방활동이 가지는 실제적 효과에 관련된다. 여기서 메커니즘은 어떻게 범죄예방활동이 효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관한 특정한 가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범죄예방활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재적 평가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실재적 평가방법'이 다른 평가방법들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연구에서는 실재적 평가방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CCTV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보여지고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자발적인 형태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도 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유형의 범죄에서 다른 범죄유형으로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치환하기도 한다. 둘째로 CCTV는 범죄자의 적발·검거를 도움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확인된 범죄자를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가정은 보다 많을 수 있다.

CCTV의 효율성 평가에서 필요한 것은 환경-메커니즘-실제적 결과의 구성(configuration)을 만드는 것이다. 실재적 평가의 좋은 출발점은 과거의 평가연구인데 그것은 평가연구에서 이용되거나 발전될 관점들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를 고안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CCTV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역기능에 대해서도 견해를 가지고 있다. 평가를 시작하면서 환경 - 메커니즘 - 실제적 결과의 구성없이 연구자는 어떠한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 Gill과 Turbin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소매상점에서의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한 것이다.⁷⁾

3. 실제적 평가의 사례

가. 조사방법

이 연구는 2개의 할인의류매장에서 12개월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매장은 모두 중간규모의 크기였다. 1개의 상점은 셰필드(Sheffield)에 있으며 다른 것은 리즈(Leeds)에 있다.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고, CCTV를 설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CCTV를 제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원(data source)은 고객, 직원, 상점 절도범, 재고조사의 네가지였다. 각 상점에서 CCTV의 설치 전후에 각 120명의 고객과 인터뷰하여 총 480명의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상점 입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되었으며, 매장밖으로 나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 상점의 직원들은 3회에 걸쳐 인터뷰하였다. 즉 CCTV의 설치전과 설치중, 그리고 그 제거후의 인터뷰이다. 이러한 접근은 조사기간중 직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직원 1인당 약 1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보안에 관한 문제, 피해와 다양한 보안장비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인터뷰에서는 첫 번째의 인터뷰보다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25명의 직원이 CCTV의 설치전에 인터뷰했고 27명의 직원이 CCTV의 설치후에 인터뷰했다. 그리고 CCTV의 제거후에는 9명의 직원이 인터뷰했으며, 이들은 모두 이미 2회씩 인터뷰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38명의 절도범과 인터뷰하였는데, 이들중 22명은 남자이고 16명은 여자이며, 연령은 16세에서 46세까지였다. 이 중 5명은 보호관찰중이었으며, 31명은 매장에서 적발된 범죄자들이었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상점 절도에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인터뷰의 목적은 범죄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재고조사가 수행되었는데, 리즈에서는 처음 15주 동안은 매주 재고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3주마다 이루어졌다. 셰필드에서는 처음 13주동안에는 매주 재고조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직원의 부족으로 15, 18, 23, 27주에 재고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와 시험된 메커니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7) Martin Gill, Vicky Turbin, CCTV and Shop Theft: Towards a Realistic Evaluation, Surveillance, Closed Circuit Television and Social Control, 1998, pp. 189-202.

〈표-1〉 자료원과 메커니즘과의 관계

메커니즘	직원 인터뷰	범죄자 인터뷰	고객 인터뷰	재고 조사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
12		.		

나. 메커니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메커니즘이 설정되었으며, 메커니즘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자, 소매상, CCTV의 설치자 등의 견해가 참고되었다.

- ① CCTV는 직원들이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하는데 자신감을 줄 것이다.
- ② 직원들이 CCTV에 의존함에 따라 직원들에 의한 경비가 소홀해 질 것이다.
- ③ CCTV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CCTV는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로 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은 범죄발생을 억제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CCTV는 상점내 취약지대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⑥ CCTV는 검거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⑦ CCTV의 화면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⑧ 고객들이 CCTV에 의한 감시를 싫어한다면 매상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 ⑨ 고객들이 CCTV의 설치에 의해 안전하고 쇼핑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매상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⑩ CCTV설치에 의해 범죄자들은 검거될 위험이 커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 ⑪ 범죄자들은 CCTV에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⑫ CCTV가 작동중이라는 표지판은 범죄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범죄자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환경에 관한 문제

CCTV가 설치되기 전에 양 상점의 직원들은 상점보안과 근무중 범죄경험에 관해 인터뷰되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상점내에서 특별한 환경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내부적 환경과 상점 주변의 지역적 조건은 CCTV가 설치되는 환경의 일부를 형성한다.

명백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태도이다. 만일 직원들이 CCTV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CCTV를 환영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다. 이러한 적대적 환경은 특정 메커니즘이 야기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환경에서는 CCTV의 시스템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CCTV를 환영하는 곳과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CCTV는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부적절한 환경조건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각 상점에 대한 환경 문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원들에게 범죄에 대해 물었다. 양 상점의 직원들은 욕설이나 폭력보다는 상점 절도에 관심이 많았고 이는 상점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즈상점의 직원들은 셰필드 상점의 직원에 비해 상점절도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보고 사례도 많았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상점절도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실제로 직원에 대한 폭력사건의 절반 이상이 상점절도를 다루는 과정에서 야기된다고 한다. 회사의 재고조사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 리즈에서는 주당 평균 700파운드의 손실이 있었으며, 셰필드에서는 주당 평균 400파운드의 손실이 있었다.

직원들은 CCTV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CCTV가 설치되기전 직원들은 그것이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체로 적극적인 보안 장비로서 환영하였다. 양 상점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CCTV가 상점절도를 적발·억제하고 직원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 상점에서의 CCTV시스템은 범죄를 적발하는 것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모니터는 보통사이즈(28")보다 크게 하였고 상점내 낮은 곳에 걸어 두었다. 화면의 질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사기간중 기소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정책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혐의자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실제적 결과

실제적 결과는 제안된 각 메커니즘에 대해 조사된 결과이다. 12개의 메커니즘중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것도 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여 메커니즘이 승인되어야 하는지, 거부되어야 하는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할 수 있었다. 각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메커니즘 ①

이는 CCTV가 직원들이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하는데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양적 증거로부터 이것이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임이 밝혀 졌다. 직원들은 대치상황에서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카메라는 몇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준다. 먼저 범죄자에게 그들이 카메라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직원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혐의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녹화한 테이프로서

위협을 할 수 있다(카메라가 실제로 사건을 녹화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증거가 녹화되었다고 즉각 위협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절도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혐의자를 대함에 있어서 직원들은 자신감을 가졌다. 요컨대 CCTV는 직원들이 혐의자를 대함에 자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추궁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메커니즘 ②

이는 직원들이 CCTV에 의존함에 따라 직원들에 의한 경비는 소홀해 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직원들은 자기들이 역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혐의자들과 대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많은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 뿐 아니라 상점절도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원들이 CCTV만으로 상점절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메커니즘 ②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카메라가 적극적으로 관리된다면, 상점내 카메라의 존재는 직원들의 경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제안될 수 있다.

특히 녹화테이프를 훈련목적으로 활용하면 보안문제에 관해 직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녹화된 상점절도의 장면을 훈련도구로

사용하면 상점절도의 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CCTV는 직원훈련에 기여할 수 있고 직원들간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3) 메커니즘 ③

이는 CCTV가 고객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관리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양 상점의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가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CCTV를 사용하였다. 다수의 직원들은 고객(과 상점절도범)의 위치가 알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니터를 이용하였다. 일부 직원은 직원이 부족할 때 CCTV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CCTV가 단순히 범죄예방 뿐 아니라 고객서비스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만일 CCTV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메커니즘 ④

이는 CCTV에 의해 의심스러운 행동이 발생하는 장소에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그리고 배치된 직원들에 의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범인 검거

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직원들은 상점절도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CCTV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였다. 직원들은 CCTV를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시하며 필요하면 예컨대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면서 접근한다. 그러므로 CCTV는 간접적으로 직원의 배치를 돕는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장소에 직원들의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메커니즘 ⑤

이는 CCTV가 상점내 분쟁지역(trouble-spot)을 확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원들은 이미 매장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양 상점의 직원들은 각 상점의 어느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에 대해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였다. 직원들의 이러한 생각은 과거 상점절도사건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다.

누구도 분쟁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각 상점의 직원들은 이미 분쟁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 CCTV가 상점내 분쟁지역을 확인하는데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다른 환경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예컨대 신설매장), CCTV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6) 메커니즘 ⑥

이는 CCTV가 범인검거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증거

는 CCTV설치전과 설치중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사건보고서의 분석에 의해 제공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 양 상점의 점원들은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사건보고서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데이터수집이 충분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자료의 부족으로 이 메커니즘에 대한 시험은 실패하였다.

7) 메커니즘 ⑦

이는 CCTV의 화면이 범죄자의 기소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조사기간중 녹화된 증거가 경찰에 입수된 후 2명이 기소되었다. 조사기간중 경찰에 의해 입수된 테이프가 몇 개 더 있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CCTV에 잡힌 첫 번째의 상점 절도사건은 사건당시 혐의자가 조사대상 상점에서 붙잡히지 않았고, 테이프만 경찰에 제출되었다. 며칠후 동일한 범죄자가 다시 약국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되었고 경찰에 의해 CCTV테이프상의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범죄자가 테이프 증거를 보았을 때 그녀는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기소되었다. 두 번째의 사고는 Leeds 상점에서 두 개의 외투를 훔친 남자범죄자인데, 판매보조원중의 한명이 테이프를 보고 범죄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그 이름을 제공하였다.

위 사건에서 CCTV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는 알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개의 사건은 테이프 증거가 범죄자의 검거에는 유용하지만 그 기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 비교적 적은 수의 기소는 CCTV가 범죄자의 검거나 기소의 목적보다는 주로 범죄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평소 상점절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CTV가 범죄자를 검거·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새로운 문제로 남는다.

8) 메커니즘 ⑧, ⑨

메커니즘 ⑧은 고객들이 CCTV에 의한 감시를 싫어한다면 매상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반대로 메커니즘 ⑨는 고객들이 CCTV의 설치에 의해 안전하고 쇼핑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매상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고객과의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고객들은 보안장비를 보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싫어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35%만이 CCTV를 보았고 65%는 그러하지 않았다.

고객들의 대다수(70%)는 CCTV를 환영했으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우려도 표명하지 않았다. 고객들의 4.8%만이 상점내 CCTV의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들은 보통 탈의실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메커니즘 ⑧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고객들은 대체로 CCTV를 싫어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환영

하였고, 따라서 CCTV가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기는 어려웠다. 도심지 고객들에 관한 한 연구는 이 연구보다 CCTV의 수용도에 대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Poole은 버밍햄에서 구매자의 98%가 CCTV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Honess와 Charman은 도심지의 89%와 상가의 85%의 이용자들이 CCTV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상당 다수의 고객들이 그들에게 안전감을 준다는 이유로 CCTV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점에 의하여 고객들이 상점을 보다 빈번하게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이 연구에서는 메커니즘 ⑧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하였지만, 메커니즘 ⑨가 사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9) 메커니즘 ⑩

이는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자들의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CCTV의 설치로 그들이 불잡힐 위험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대체로 범죄자들은 화면의 질이 나쁘거나 상점내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5분의 2의 사람들은 그들은 때때로 또는 언제나 카메라에 의해 억제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CCTV는 메커니즘 ⑩에 의하여 일부 범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인터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은 다른 연구와도 일치한다. French는 24.1%의 범죄자들이 CCTV가 작동 중이라도 여전히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40%로 상승했다. Horne는 이러한 수치는 범죄자들이 CCTV카메라가 비효율적거나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면서, 만일 범죄자들이 CCTV로 인해 그들이 검거될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효율성은 급속히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Butler는 또한 CCTV는 직업적인 절도범들에게는 억제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그러나 여기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CCTV가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10) 메커니즘 ⑩

이는 범죄자들이 그들이 CCTV에 덜 보여진다고 느끼는 상점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CCTV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검거될 위험성이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 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이 CCTV로 인해 검거될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굳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범

죄자들은 카메라에 억제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1) 메커니즘 ⑪

이는 CCTV가 작동중이라는 표지판의 존재는 범죄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범죄자들이 느끼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메커니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장치는 조사대상자들에게 별다른 억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물론 일부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12) 재고손실에 대한 효과

재고손실에 대한 조사는 그것을 통하여 CCTV가 상점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메커니즘을 논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고조사의 데이터는 조사기간중 각 상점에서 상점절도의 실질적 수준을 보여준다. 재고조사는 원래 CCTV의 설치전과 설치중 그리고 설치후의 세 차례에 걸쳐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초의 두 차례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세 번째의 조사에서는 실제적인 어려움(예컨대 크리스마스)으로 데이터의 수집이 여의치 못하였다.

쉐필드에서의 재고조사는 연구와 관련하여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쉐필드 상점의 재고손

9) Martin Gill, Vicky Turbin, CCTV and Shop Theft: Towards a Realistic Evaluation, Surveillance, Closed Circuit Television and Social Control, 1998, p. 199.

실은 주당 약 400파운드로 추산되었지만, 데이터분석중 이 수치는 수개월간의 몇 건의 강도사건에 의해 수치가 상승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상점은 CCTV가 시험될 수 있는 원래의 환경조건에서 심각한 재고손실의 문제를 가지지 않았다. 한편 리즈에서는 CCTV의 설치전 주당 약 600파운드의 재고손실을 보였으나, CCTV가 설치된 후에는 약 200파운드의 손실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에는 고려하기 어려운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CCTV가 상점에 설치된 기간동안에는 재고손실의 감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4. 결 어

① 본고에서 소개한 평가사례는 상점절도에 대한 CCTV의 효율성을 평가한 한 연구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CCTV의 효율성 전반에 관한 평가는 물론 아니며, 주차장이나 도심지 등 환경이 다른 장소에서는 그 평가결과도 물론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CCTV의 효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실재적 평가방법'의 입장이다. 사례에서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만 범죄자들이 CCTV에 의해 그다지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이 된다.

② CCTV의 효율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 없이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우에 범죄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은 과

정을 거치고 있다. 즉 새로운 대책이 소개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많은 실무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앞다투어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 진다. CCTV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의 성공사례에 대한 풍문은 그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범죄예방정책에서의 실패사례를 CCTV에 있어서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의 효율성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CCTV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CCTV를 평가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으며, 무비판적인 사용을 부추길 뿐이다. '실재적 평가방법'은 CCTV의 효율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하고, CCTV가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환경속에서 CCTV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CCTV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결과를 최대화하고 예기치 않은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실재적 평가방법은 CCTV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범죄예방활동의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범죄예방은 일련의 환경 - 메커니즘 - 실제적 결과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책결정자나 실무자들이 현실적 범죄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보다 사려깊은 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

국제반부패회의와 부패방지노력

1. 서론

1997년 12월의 OECD 뇌물방지협약가입 및 올해 2월의 동협약의 이행입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제상거래상의 부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의 위원회 등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몇몇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¹⁾ 그러나 아직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미 1996

년 11월에 입법청원이 된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운동분야에서의 연대활동은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이미 발효중인 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법적 성격이 큰 반면에, 전지구적 관점에서 사회 모든 분야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국제반부패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국제반부패회의의 제9차 회의가 올해



이상웅

(연구원)

10월에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개최되며, 여기에서는 1997년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부패에 대항하는 리마 선언'의 이행상태도 점검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국제투명성위원회로부터 대도시의 부패척결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되어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반부패회의와 리마선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부패척결의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국제반부패회의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는 1981년 홍콩의 부패방지기구인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주최한 국제반부패대책기구회의에서 그 개최에 대한 논의가 시작

1)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정책추진위원회 설립과 역시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기구인 부패방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검찰총장 직속의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등이 올해 발표된 계획이다.

되어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13개국 21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회가 개최되면서 발족된 것이다. 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는데, 개최를 거듭하는 동안 각국이 부패추방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화 조직화되어가는 부정부패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회의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가하였다.²⁾ 현재 이 회의는 각국의 검찰과 경찰, 회계검사 및 감찰기구 등 부패추방기구의 대표와 전문가간에 부패추방활동의 경험을 직접 교환하는 장으로 확고히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대표자들까지도 참석하면서 부패추방에 관한 전세계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마당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투명성위원회는 이 국제반부패회의의 의제선정과 논의방향의 유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이 회의는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³⁾ 1997년 제8차 회의에서 발표된 '리마선언(The Lima Declaration against Corruption)'은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와 협동하에 부패와 투쟁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종합하려는 지구공동체의 최초의 시도를 대

표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선언의 실천여부는 다음 회의인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점검될 예정이다.⁴⁾

3. 리마선언

1997년의 리마선언은 그 당시까지 지적되어온 부패의 폐해를 요약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부패에 관련된 그때까지의 오랜 논의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온갖 분야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단기적 대책들이 망라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해질수록 뇌물수수 기법도 발달하겠지만, 이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 언론의 활동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차 반부패회의의 환영사는 "부패에 대항하는 투쟁 속의 국가와 시민사회(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라는 제목으로, 이 회의의 논의에서 부패의

2) 이 회의의 역사를 소개한 것으로는 "Anti-Corruption Conference History", <http://www.transparency.de/iacc/pastiacc.html> : 국제 반부패활동의 동향,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5, 21-22면. 이 책은 감사원장과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등 한국대표단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된 1995년의 제7차 국제반부패회의에 참석한 후 발간한 것이다.

3) 국제반부패회의의 평의회(IACC Council)는 1996년에 국제투명성위원회와의 협력하에 그 사무국으로서 설립되었다. "Anti-Corruption Conference History", <http://www.transparency.de/iacc/pastiacc.html>

4) 리마선언 전문은 <http://www.transparency.de/iacc/lima/e-limadecl.html>

예방을 위한 언론매체와 직업교육 및 학교교육의 역할에 특별한 강조가 주어질 것임을 밝혔으며,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사업자단체들, 개별 기업과 직업단체들 등, 시민사회가 정부와 협력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도 검토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환영사는 이밖에도 이 회의에서 부패방지에 효과적인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제8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채택된 리마선언은 우선 부패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곧 부패는 모든 사회의 도덕적 구조를 파괴하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모든 문명화된 사회의 기초인 법의 지배의 원칙을 전복시키며,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를 부정하며, 특히 가난한 자들을 부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부패와 싸우는 것은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일이며, 그 싸움은 모든 사회에서의 윤리적 가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와 민간영역 사이에 제휴가 형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제휴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패를 제거하겠다는 개별 정부의 약속이 진실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역할은 현상을 고착시키려는 자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의미있는 개혁의 뒤에서 일반대중을 동원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민간부분에도 부패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운동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 모든

사회에서 최고지도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들과 전세계의 시민들이 그들의 노력과 힘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리마선언은 이 활동들을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활동들과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의 활동들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바, 전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선언은 국제연합, 유럽연합, 미주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국제형사경찰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부패척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역할은 “올바른 국가경영”을 발전시키는 데 시민사회가 발휘해야 하는 창의적인 역할을 더욱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조달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및 부패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대출 및 원조를 보류하거나 거절한다거나,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그 뇌물에 대한 세액공제조치를 철폐하는 것 등 각각의 기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에선 또한 국제적인 은행업무상의 규제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이 추적되고, 동결되고, 몰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역외 은행업무센터를 국제통화체제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비밀의 보호가 범죄자를 위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검찰관협회, 국제변호사협회, 회계사와 감사관들의 국제적인 연합체 등 국제적 직능단체들도 각국의 지부들에 대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수행상의 기준들이 유지, 강화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에는 모든 재정거래들이 기록되고 장부외거래나 비밀회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백하고도 보편적인 회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 회계가 일반 국민의 주의깊은 감시에 개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선언은 시민사회 역시 비정부기구들의 자기개혁과 함께 자신들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곧 비정부기구들은 시민사회의 일종의 기관으로서, 그들이 그들의 정부에 기대하는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기준과 같은 정도의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자기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독립과 완전무결함, 그리고 비정치화를 확보해야 하며, 자체적인 감사활동과 아울러 감사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독립적인 언론매체의 역할도 필수적임이 밝혀져있다. 언론은 부패한 자는 아무리 부자이

건 권력자이건 경멸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언론매체 스스로도 뇌물과 부적절한 무료숙식을 제공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패는 공정한 선거와 정치과정에 주된 장애물이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기부행위가 규율되고 지체없이 공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선거비용에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히 감시하는 조치가 긴급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시민교육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와 인허가, 독점이나 재량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준조세성 기부금과 같이, 뇌물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아직 남아있는 경제적 기회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선언은 또한 부패에 대한 법률적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합치하는 한 더욱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인 선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선물의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할 것,

둘째,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갖추고, 적법한 수입원천에 상응하지 않는 재산증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할 것,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중요한 정책결정자들과 그 가족 및 사업상 동료들의 재산과 생

활양식을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넷째, 부패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은, 그것이 어디에 소재하든 누구의 소유이든 동결하고 압수하고 몰수하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다섯째, 내부고발자 등 부패사건의 증인과 그 가족을 적절히 보호할 것,

여섯째, 공무원이 받은 선물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출 것,

일곱째, 지위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부패관련법률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할 것,

여덟째,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정치적 직위에 입후보하거나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이다.

4.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

올해 10월에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주제는 “전지구적 청렴 : 2000년 그 이후 - 변화하는 세계에서 부패방지 전략의 개발(Global Integrity: 2000 and Beyond - Developing Anti-Corruption Strategies in a Changing World)”이다. 이 회의는 아프리카대륙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국제반부패회의로서, 아프리카의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관심이 점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프로그램 역시 아프리카의 문체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회의는 특히 리마선언을 재검토하게 될 것인데, 이는 형사사법, 시민사회, 민주화, 발전과 국제통상 및 재정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밖에도 내부고발, 재정적 책임과 통제, 환경, 경찰의 청렴 등등의 많은 주제가 워크샵의 주제로 제안되어 있다.⁵⁾ 모든 회의는 언론에 공개되며, 리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특별한 그룹과 비정부기구에 워크샵이 배당될 것이다. 이 회의의 성과로 기대되는 것은 리마선언의 이행에 대한 실적조사와 함께 행동강령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며, 이는 또 다음 회의에서 점검될 것이다. 이밖에도 반부패 의제의 재설정, 지역특유의 프로그램의 개발,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 기존의 반부패선언과 협약들의 재검토, 개발기금기구들의 정책의 모순의 검토, 시민사회의 전략의 개발 등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음의 제10차 회의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⁵⁾

이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될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은 서울시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의 끈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행정을 통해서 부조리를 예방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인데, 이권업무의 처리 등 부조리의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행정은 그 처리 과정 전체를 인터넷에 올려놓음으로써 시민이

5) <http://www.transparency.de/iacc/index.html>

온라인망을 통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원인은 민원처리의 진행과정, 각 분야의 업무내용, 관련 법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유, 후속절차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⁶⁾

5. 맺음말

이번 국제반부패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으로 우리가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의 부패방지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성과가 검증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시민의 조직적인 참여와 감시활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밀받침이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의 설치를 구상해 왔으나, 이번 8.15사면에서도 대표적인 권력형비리행위자가 이른바 변칙사면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의지가 퇴색되었다. 다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앞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부패방지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⁸⁾ 이것을 계기로 부정부패방지대책이 무성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듭으로써 조금씩이나마 우리사회의 불신이 제거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전까지의 시민운동단체들의 고립분산적인 부패추방활동을 조직화하여 연대구조를 갖추고, 각 부문별 전국적 조직과 지역의 자생적 시민단체들에 이르는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칭)반부패국민연대(The Anti-Corruption Network in Korea)를 창립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⁷⁾ 반부패국민연대는 창립후에 국제투명성위원회의 한국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도 검토중이며 오는 10월의 국제반부패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부패방지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더욱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또 국제적 협력하에 수행된다면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발붙일 곳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6) 이는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에 '민원처리 공개방'이라는 메뉴로 제공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건축, 소방, 위생, 교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비롯하여 토지형질, 재개발 사업, 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은 특수민원 등 모두 10개 분야 27개 업무이다.

7) <http://www.transparency.or.kr/>

8) 한겨레신문, 1999. 8. 18일자, 1, 5면.

일본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1. 서 언

오늘날 인터넷의 폭발적 보급은 컴퓨터 및 정보처리 관련분야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 분야에도 이른바 '행정정보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교정정보네트워크시스템'은 1995년부터 운용이 개시되었고 현재 그 하부시스템으로 영치물품 관리시스템 등의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 일본의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이 우리 나라의 교정정보화작업에 일응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일본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현황

가.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의의

교정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18일 발하여진 법무성 교총3178호 "교정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취급요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훈령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정 완(역)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기재된 바를 인용하면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이란 "형무소, 소년형무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및 부인보도원 및 교정관구와 교정연수소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PC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제까지 장부 등 '종이'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하던 것을 컴퓨터 등에 의한 전자정보처리로

바꾸는 것으로, 교정업무의 합리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다. 다만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처리에 적합한 업무를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전자정보처리로 바꾸어 가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또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은 교정시설 등의 네트워크이고 피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인 점에서, 집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처우'의 향상 및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목적이다. 요컨대,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은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一柳光司, "코-넵트의現狀と今後の展望", 刑政110卷2號(1999.2)를 정리한 것임.

나. 교정LAN, 교정WAN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은 교정LAN과 교정WAN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LAN은 위 훈령에 “교정시설 등에 있어서의 시설내 통신망”으로 정의되어 있다. 서버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서의 PC(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시설내 네트워크이다.

예컨대, 피수용자의 성명, 형기 등에 대하여는 서무과에서 입력하고, 영치금 등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입력하며, 작업 등에 대하여는 처우부에서 입력하는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상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의 일원적인 관리 및 사무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에 의하여 프린터공유와 워드프로세서 문서 등 데이터의 공유도 실현되어 있다. 교정WAN은 위 훈령에 “교정시설 및 백업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정의되어 있다. ISDN회선에 의하여 전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피수용자의 시설간 이송 등에 수반하는 정보의 교환, 각종 보고문서의 전자정보로의 제출 등에 이용되고, 정보의 공유 및 유효활용이 도모되고 있다.

다. 백업센터

東일본(川越소년형무소)과 西일본(大阪형무소)의 2개소에 백업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의 각종 전자정보를 집약함과 동시에 각종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 네트워크의 장애감시, 운용감시 및 성능감시 등을 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를 상주

시키고 있다. 또 재해시 등의 데이터 손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의 정보는 2개소에 동시에 공유되고 있다.

라. 서버, 클라이언트

1995년도에는 교정LAN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버는 1시설 1대(다만, 소규모시설은 서버 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각 과 및 각 부문마다 1대의 기준으로 정비되었다.

금년도는 기기 스펙(기능)의 향상, 클라이언트의 증설정비 요망 등을 근거로, 행형시설에 대하여는 서버 1대, 클라이언트 5대,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서버 1대, 클라이언트 2대를 기준(다만 지소는 클라이언트 대수를 조정)으로 하여 증설정비를 실시한다.

〈표 1〉 서버, 클라이언트 정비대수

구분	서버			클라이언트		
	95년	98년	계	95년	98년	계
관구·연수소	8	10	18	58	19	77
행형시설	101	187	288	1,001	580	1,581
소년원		53	53	241	106	347
감별소		53	53	178	105	283
보도원			0	1		1
계	109	303	412	1,479	810	2,289

마. 지정소프트웨어

현재, 교정네트워크시스템에서는 전시설에서의 통일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과 장통지에 의하여 지정된, 〈표 2〉와 같은 각종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지정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신 지정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정소프트웨어

구분	소프트웨어명	운용일자	비고
피수용자 관계	· 급식관리시스템	1997.1.1	개발중
	· 피수용자데이터 관리시스템(행형)	1997.2.1	
	· 피수용자데이터 관리시스템(소년)	1997.4.1	
	· 영치금·작업(직업보도) 상여금관리시스템	1997.7.1	
	· 집단심리검사관리시스템	1998.4.1	
	· 구입물품관리시스템	1998.7.1	
	· 영치물품관리시스템	-	
직원관계	· 급여계산시스템	1997.1.1	
	· 여비계산시스템	1997.4.1	
시설관계	· 비품·소모품관리시스템	1997.1.1	개발중
	· 파일전송시스템	1997.9.1	
	· 보고문서관리시스템	1998.4.1	
	· 공통장부관리시스템	1998.4.1	
	· 도서등정보관리시스템	-	

1) 구입물품관리시스템

피수용자로부터의 자변품의 구입원선을 마크시트로 고쳐 OMR(광학식마크인식)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력처리를 대폭 합리화하는 것이다. 행형시설(94청)을 대상으로 4년 계획으로 순차 도입해 갈 계획이다.

2) 영치물품관리시스템

영치품기장을 전자정보화하는 것이다. 행형시설(185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음성 입력에 의한 데이터 등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바, 조작성 간편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화가 완성되면 검색 등이 손

쉬워져 보다 적절한 영치물품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서 등 정보관리시스템

교정WAN에 그룹웨어를 도입하여 그 전자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고 외국어도서와 의약품 정보를 전 시설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교정시설 등 전청(303청)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어떠한 언어의 어떠한 도서를 어느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를 간단히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업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3〉 1998년도 교정네트워크시스템 관련 연수

구분	연수명	대상자	비고
전공과 (본소)	정보처리 기술자연수	연수지소교관	NEC에 위탁연수
	정보처리 담당자연수	BC직원	
전공과 (지소)	교정LAN 관리자연수	교정LAN관리자	신규
	교정LAN담당자 연수(행형)	행형DB담당자	
	교정LAN담당자 연수(소년)	소년DB담당자	
	WAN책임자연수	관구WAN 담당자(가칭)	
연구과(피수용자 DB데이터의 활용방책)		선정자 2명	

바. 직원연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충실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직원이 양성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교정네트워크시스템에 관한 연수는 교정연수소, 동 지소 공히 다음과 같이 계획

실시되고 있다. 순회연수 등 연수에 관한 요망도 많지만 예산사정으로 전달연수, 자청연수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교정네트워크시스템에 맞는 '연수교재 정보처리'가 이미 교정협회에서 간행되어 있으므로 자청연수의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전망

가. '행정정보화'의 동향

교정네트워크시스템 준비의 배경인 '행정정보화'는 총무청이 주체로 되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법무성 및 교정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1) 1인 1대 PC

정보화의 기반으로 1인 1대의 PC를 정비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거의 달성되었고 금후 지방지분국에서의 달성이 목표로 되어 있다. 교정에 있어서 교정관구, 현장시설순으로 PC의 증설정비를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으로 구체적 계획은 미완이다.

2) 문서관리시스템, 문서파일링시스템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하는 종합적 문서관리, 문서화일 목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이다. 법무성에서는 문서관리시스템을 1999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현장시설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클리어링시스템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행정정보의 소재안내 시스템이며, 이미 일부 운용이 개시되었다. 법무성에서는 1999년도까지 정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 현장시설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다.

4) 법무성 WAN

중앙부처차원에서의 네트워크가 이미 실현되어 있어, 메일, 국회정보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후 기능 확충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법무성에는 법무성 WAN구축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교정네트워크시스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차 법무성의 전 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나. 하드웨어

전술한 '1인 1대 PC'의 방침 등에서 교정네트워크시스템 및 PC의 증설정비가 불가피하지만, 현재와 같은 엄격한 예산사정하에서의 조기실현은 곤란하다. 예산요구 상황 등을 근거로 가능한 한, 교정관구, 시설의 총무계통의 정비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의 업그레이드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프트웨어

'비상배치관리시스템', '교정의료관리시스템' 등 교정 독자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도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직원연수

앞으로 충실을 더욱 기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수가 보다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는 학교에서 PC 사용을 숙지한 직원이 많이 채용되어 소위 '정보리터러시'가 높은 직원이 증가될 것이다.

마.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종이'의 처리로부터 전자정보처리로 완전히 이행하는, 진정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이 과제일 것이다.

첫째, 업무의 근거규정 재검토이다. 전자정보처리를 상정하지 않은 시대에 제정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전자정보처리로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전자결재'의 확립이다. 전자정보처리한 것을 인쇄출력하여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보 그대로 결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바. 피수용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이미 연20만 건을 넘는 피수용자의 개인데이터가 백업센터에 축적되어 있어, 처우의 방침을 작성하기 위한 귀중한 기본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귀중한 데이터를 여하히 통계처리, 분석하여 처우에 반영할 수 있는가가 과제이다.

이번에 정비될 '도서 등 정보관리시스템'의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리얼타임으로 피수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사. 데이터공유의 추진

피수용자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교정WAN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면, 교정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전술한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예컨대 감별사례와 보안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교정네트워크시스템의 Q&A 등의 구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교정의 '인트라넷'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4. 마무리

기안자가 문서를 기안할 때 종이에 수기하던 것이 불과 엇그제의 일이었지만, 현재에는 PC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외부에의 문서발신도 'FAX'라는 편리한 방식이 정비되어 있다. 우리의 작업방식은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도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른바 '전자결재' 즉, 결재를 네트워크 상에서 받고 PC로 보고서를 송부하는 작업 방식도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PC에 종속되지 않고 PC를 '편리한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일반직원, 간부직원을 불문하고 각자의 레벨에 따라 전향적으로 PC사용법을 연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조직범죄 대책의 변화

신 의 기(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우리나라에서도 조직범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활동양상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직범죄집단은 과거와 같이 유흥업소의 이권을 중심으로 거대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사채업, 신용카드업, 파이낸스, 주점, 사설도박장, 증권,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수법도 합법을 가장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일 적발된 국제마약밀매조직의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통한 돈세탁은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조직범죄집단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검찰 등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계파별 단속을 중심으로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이러한 조직범죄집단의 다양화, 지능화에 따라 이들이 개입하고 있는 이권 분야별로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대처를 위해 과거에는 구성원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었으나 출소후 다시 범죄집단에 가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조직범죄집단의 자금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직범죄집단은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자금원

의 차단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주요 업소를 우선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탈세, 무자료거래, 변태영업과 일반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이르기까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탈세를 통해 조성된 범죄자금은 철저한 추징을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조직원의 개인재산 조성경위의 적법성 여부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세관과 함께 공항과 항만에서 감시체제를 강화, 폭력조직의 총기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밀반입 및 음란물 유통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공조해 집중단속을 펴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범죄집단과 연계해 범죄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국제적 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직범죄집단의 이권사업을 비호하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특히 공무원의 단속 묵인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하였다.

또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범죄 제보자에 대해 보상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자금과 거처를 제공하고 신변을 밀착 보호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폭력조직원 개개인의 파일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16차 국제형법학회(AIDP) 개최

정 현 미(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일시: 1999. 9. 5.-11.

장소: 부다페스트

주제: "형법체계의 시험대로서 조직범죄"

국제형법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Pénal)가 1994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학회에 이어 올해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 국제형법학회는 1926년 브뤼셀에서 제1회 학회를 개최한 이래 2차 세계대전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47년 제네바학회에 이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학회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국제형법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16차 국제형법학회는 "조직범죄"란 테마를 다룸으로써 지역에 따라 조직범죄의 전개양상과 법적 형상이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조직범죄의 거대한 양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논의의 목표는 조직범죄의 정의의 모색보다 조직범죄의 고착과 변화의 분석에 두고 책임, 적절한 제재의 모색, 구성요건, 증거법, 국제공조의 개혁 등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제1분과 : 총론: 조직범죄에서 형법적 책임

범죄조직의 형법적 책임,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비교법으로 다루는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와 형법적 책임론의 핵심에 놓인 정범과 공범에 관한 이론이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조직의 주도자를 처벌할 특별구성요건이 필요한가? 이러한 특별구성요

건은 어느 정도의 조직을 전제로 하는가? 범죄집단의 생성을 근절하기 위한 제재가 존재하는가? 조직범죄영역에서 제재의 예방적 효과는 어떠한가? 등이 논의된다.

제2분과 : 각론: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 형벌 구성요건

국가 및 지역에서의 조직범죄의 본질적 양상 및 이러한 범죄형태에 관한 주요원인을 고찰한다. 그리고 현행법으로서 충분한가 혹은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핵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이루어진다. 조직범죄에 대한 특수한 구성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행법으로 돈세탁의 처벌이 가능한가? 일련의 불법적 국제거래의 범죄형태에 관한 논의: 어린이 유괴, 배아, 신체기관, 동물, 약물, 예술품, 핵물질, 차량 등.

제3분과 : 절차법: 조직범죄영역에서 증거법
조직범죄영역에서 증거법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다. 입증책임의 전환, 증거방법의 확대 문제, 범죄조직원에 의한 신고 및 판사, 증인, 피해자 등 절차관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문제된다.

제4분과 : 국제형법: 국제적 공조

각국의 형법의 조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형법재판소의 권한 등 국제적 공조를 다루게 된다.

* AIDP' 99 H-1250 Budapest, P.O.B. 25 Hungary



일본에서의 인터넷 사기거래 현황과 검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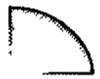
정 완(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일본에서도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PC통신상의 게시판 등을 이용한 악질사기거래수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터넷 쇼핑 사기거래 수법이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물건을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등 사기의 의혹이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사기의 범인은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가공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공작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하고는 네트워크상에서 소멸함으로써 추적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피라미드식 사기거래 수법이다.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조직에 가입한 후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킴으로써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면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금전배당조직이며, "무한연쇄피라미드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또 이러한 조직확대시스템에 물품판매 등을 교묘히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팔 수 없는 물건을 포함시키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구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거래수법이다. 최근에는 이들 시스템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권유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네트워크 이용 악질사기사범의 검거상황을 보면, 사기사건, 피라미드사기사건 등에 대한 인지건수 및 검거건수는 1996년 각 8건, 1997년 각 6건, 1998년 각 12건 등이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낚시대 통신판매 사기사건 : 인터넷상 매니아 사이에서 인기있는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응모자 8명으로부터 함께 53만여엔을 갈취한 사건으로 1999년 5월 회사원 1명을 체포(아이치).
- PC통신판매 사기사건 : 인터넷 홈페이지에 PC판매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응모자 약 110명으로부터 약 840만엔을 갈취한 사건으로 1998년 9월 컴퓨터 접속회사의 회사원 한 명을 체포(히로시마).
- 국제피라미드조직 펜타곤사건 : 이탈리아의 퓨처 슬레테지사가 인터넷으로 주재하는 국제피라미드 펜타곤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13,200엔을 부담하여 회원이 되면 본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다른 3명에게 판매한 단계에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고 그 하부회원이 증가할 때마다 회원 순위가 올라가 후속회원 증가로 1번 회원이 되면 962만엔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약 11만명을 권유한 사건으로 1998년 8월에 14명을 검거(후쿠오카).
- 해외 고액현상금부 포스트카드 발매 사기사건 : 외국에 설립한 제지회사 대표자들이 1997년 "세계해양보호활동을 위한 그래픽 아트를 판매합니다. 번호를 추첨하여 고액의 현상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선전하여 약 1,500명으로부터 약 2,000만엔을 갈취한 사건으로 1998년 1월 7명을 검거(히로시마).



원상회복의 이념 - 처벌에서 화해로

박 미 숙(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원상회복(restorative justice ; Wiedergutmachung)은 최근에 들어와 피해자에 관심증대와 더불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국가의 입법례에서 원상회복 이념이 반영되는 규정이 도입되어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원상회복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에서 무시되어 왔던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냄으로써 형사사법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원상회복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주의이다. 이는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모색에서 관련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포함한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체의 이익과 법에 일치한 해결을 얻도록 촉구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원상회복은 관련당사자간의 상호이해, 화해, 그리고 평화와 인도주의 등의 매력적 요인을 갖는 것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서 출발한다. 범죄자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갖지도 않았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가해자 원조와 처우는 교정 및 사회복지모델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접근에 있어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원상회복

은 잘못된 것에 대한 구제를 통해 범죄자·피해자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UN의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제7차 회의의 총회에서 채택된 범죄피해와 권한남용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존중과 동정으로 처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법·행정기구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식적이고도 비공적인 절차를 통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조정, 중재, 그리고 전통적인 형사사법 또는 고유관행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해결기구는 피해보상과 화해촉진에 적합한 곳에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의 확고한 이론적인 개념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실무가들도 원상회복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부닥치곤 한다. 물론 이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징벌 내지 응보적 사상이 지배해온 법학교육의 한 단면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원인은 원상회복이 확고한 이론적 개념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먼저 원상회복을 광범한 의미에서 갈등해결로서 이해하면서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법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비난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원상회복은 공공이익이라는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비

난이나 절차적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주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주장되는 견해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응보적 정의는 특별한 기능, 요약하자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능에 봉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에 반하여 원상회복에 의하면 절취재물의 반환, 금전적 손실 보상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들은 단지 범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 공공이익의 보장이라는 목적과는 관련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민사책임이행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비난은 원상회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지 불명확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상회복이념과 관련한 비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절차적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실 원상회복은 사건의 비공식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 관련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 평화로운 해결, 상호 이해, 화해, 후회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원상회복도 형사사법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으며, 관련당사자에 의한 문제해결은 법원칙과 법적 안전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차적 권리가 무시된다고 보는 것은 원상회복 개념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원상회복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적극적인 정의를 내리는 대신에 우선 무엇이 아닌가 하는 소극적 정의에 그쳤다. 국제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Tony Marshal의 원상회복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원상회복은 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범죄의 여파와 장래에 미칠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

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우선 원상회복에 관하여 적극적 정의를 내리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원상회복을 문제해결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원상회복의 절차적 특성을 강조한 것은 단지 개념정립의 문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면적 해결방법에 불과하다는 점,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경계가 주어지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결함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결함은 극복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정의가 갖는 문제점은 원상회복이 어떻게 전통적인 응보적 형사사법과 구분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원상회복에 있어서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와 그의 자발적이고도 사회구성적인 대응태도를 문제삼는 개념이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이는 현재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방법에 의해 원상회복은 피해자 없는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후 행위자의 태도를 문제삼음으로써 전통적인 응보적 형사사법의 정의와 같은 개념적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절차적 특성이 아닌 행위자의 범행 후 태도와 관련시킴으로써 원상회복은 응보적 정의와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은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의 범행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적 활동에 의해 그 결과를 감소시키는 절차이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행위

자중심의 원상회복개념이면서도 동시에 행위 결과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또 범행에 의해 야기된 문제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행위자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익이나 관련당사자의 이익도 고려되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실제 원상회복이 행해지게 될 경우에 실무상 소위 보상절차는 매우 다양하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다.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행위자에 의한 급부 -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사회봉사의 형태이든 - 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원상회복절차에 있어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원하기만 하면 서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사실 전통적 형사절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서로 만나 보상은 의논하기도 하고, 종종 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범죄로 인한 영향을 말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반대로 범죄자는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듣고 난 후에 진실로 후회하거나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절차는 거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훈련·치료 또는 다른 도움을 제공하고 범죄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범죄자 통합의 본질적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범죄예방정책에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이 형사사법에 있어서

과연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학적 연구는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대부분 정신적 치료센터와 중한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경찰활동과 피해자보호 임무와의 관계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오는 피해자학적 지식은 실제 형사사법의 체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내지 그가 입은 물질적 손해를 위한 보상이 거의 없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영국의 원상회복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가 사법에 보다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피해자도 범죄자에게 범죄의 영향을 말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얻거나 사과를 받는데 만족했다. 범죄자가 장래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는 피해자의 비율도 낮았다.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만남 이후에 범죄자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는 피해자가 화를 내는 피해자보다 더 많았다. 음주운전자나 소년범죄자와 피해자에 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범죄자는 그들의 범행을 더욱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원상회복은 전통적인 징벌적 시스템의 사회복지효과와 같은 정도의 효과를 갖거나, 적어도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원 동정 및 관련분야 소식

국제투명성협회 대표단 연구원 방문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회장 : Peter Eigen) 대표단이 8월 13일(금)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고 이 협회와 연구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협회 수석이사 Margit vam Ham, 이사 Peter Rooke, 프로그램담당자 Folkard Wohlgemuth로 구성되었다. 국제투명성 협회는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60여개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협회는 부패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을 통한 부패방지보다는 시민운동을 통해 부패방지국가통합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회의 활동은 단행본출간, 뉴스레터발간, 시민운동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각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국제투명성협회 한국지부의 신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세계적 완전성 : 2000년대를 넘어, 변화하는 세계의 반부패전략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인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9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홍보하기 위하여 내한하였다.

박강우 박사 퇴직

국제협력팀 박강우 박사가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임용되어 사임하였다. 박강우 박사는 고

려대 법학과를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3년 12월 1일 연구원에 임용된 이래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등 북한형법, 경제형법 분야의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분야 소식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회장 정성진 국민대 교수)은 8월 20일(금) 양재동 스포타임 3층 대연회장에서 하계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연 2회 동계, 하계로 개최되는 이번 하계학술회의에서 서울대 법학과 한인섭 교수가 '무기수형자의 시설내 적응과 사회복귀'에 대한 주제로, 천안대 민수홍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자기통제이론과 범죄예방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편 연구원 범죄동향연구팀장 최인섭 연구위원과 연세대 박상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 警察學論集 vol. 52 no. 5, 6
- 犯罪學雜誌 vol. 65 no. 3
- 法律時報 vol. 71 no. 7, 8
- 判例タイムズ 5/15- 7/1 1999
- 判例時報 no. 1671-1673
- ジュリスト no. 1158-1159
- 判例時報 no. 1668-1670.
- 刑法雜誌 vol. 38 no. 3
-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 36 no. 2-3
-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 25 no. 2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4 no. 5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no. 3
- Anwaltsblatter 4/1999
- Archiv für Kriminologie Band 203 Heft 3 und 4
- Bew hrungs-Hilfe 4/1998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0 no. 1
- Canad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13 no. 2
- Columbia Law Review vol. 99 no. 2
- Crime and Delinquency vol. 45 no. 3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6 no. 2
- Criminal Law Quarterly vol. 42 no. 1
- Deuthsche Richter Zeitung 4, 6/1999
- Deviant Behavior vol. 20 no. 3
-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GA) 146. Jahrgang Heft 4, 6
- Harvard Law Review vol. 112 no. 7-8
-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 42 no. 4
-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전화 : 02 - 575 - 5284

팩스 : 02 - 3462 - 4671

www.kic.re.kr

- 89 no. 1
-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26 no. 2
-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 28 no. 3-4
- Juristen Zeitung(JZ) 54. Jahrgang Heft 7-12
- Juristische Schulung(JuS) 5-7/1999
- Juritische Arbeitsbl tter(JA) 4, 6/1999
- Juritische Ausbildung(Jura) 21. Jahrgang Heft 4-7
- Juritische Rundschau 4, 5/1999
- Justice Quarterly vol. 16 no. 2
- Kriminalistik 5/1999
- Kriminologisches Journal 31. Jahrgang Heft 2
- Law & Society Review vol. 32 no 4, vol. 33 no. 1
- Michigan Law Review vol. 97 no. 5
-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MDR) 53. Jahrgang, Heft 9-13
-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14-27/1999
- Neue Justiz 4-7/1999
-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4, 5/1999
-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ÖJZ) 54. Jahrgang, Heft 7-9, 12
- Österreichische Richterzeitung(RZ) 77. Jahrgang, Heft 6
- Recht und Politik 35. Jahrgang, Heft 2
-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ZStrR) 2/1999
- Sociological quarterly vol. 40 no. 2
- Sociology vol. 33 no. 2
- Stanford Law Review 5/1999
- Strafverteidiger 4, 5/1999
- Theoretical Criminology vol. 3 no. 2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7 no. 5-6

- Violence and Victims vol. 14 no. 1
- Wistra 18. Jahrgang, Heft 4, 6
- Yale Law Journal vol. 108 no. 7
- Zeitschrift für Strafvollzug und Straff
lligenhilfe 48. Jahrgang, Heft 2. 3

민행본

- 刑法各論/朴相基-全訂版-서울:博英社, 1999.
- Child victims, child witness: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estimony/Bette L. Bottoms, Gail S. Goodman[jt. ed.]-The Guildford Press, 1993.
-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Kimberly Ann Elliott[ed.]-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Paul E. Tracy, Kimberly Kempf-Leonard[jt. author], 1996.
- Victims' rights, restitution and retribution/Williamson M. Evers-Oakland: The independent institute, 1996.
- Victims and victims' rights/Sara Faherty-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 1999.
- Victims' rights: a complete guide to crime victim compensation/William L. Ginsburg-Florida: Sphinx Pub., 1994.
- Paying for crime: the policies and possibilities of crime victim reimbursement/Susan Kiss Sarnoff-Westport: Praeger, 1996.
-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Lee N. Robins, Michael Rutter[jt. ed.]-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Police-corrections partnerships/National Institute of Justice-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9.
- Comparing drug use rates of detained arrestees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National Institute of Justice-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9.
- Psychological research methods ; a conceptual approach/Harold O. Kiess, Douglas W. Bloomquist[jt. author]-Boston: Allyn and Bacon, 1985.
-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삐에르 부르디 ; 정일준[역]-서울: 새물결, 1997.
- Life course dynamics ;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Glen H. Elder-Ithaca: Cornell Univ. Press, 1985.
-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Chris Hamnett, Linda McDowell, Philip Sarre[jt. ed.]-London ;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Open University, 1989.
-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삐에르 부르디[저] ; 최종철[역]-서울: 새물결, 1995.
- 조직사회학 : 組織環境論을 中心으로/최창현[著]-서울: 학문사,
- 現代社會와 組織理論/秋丁韓榮春教授 華甲記念論叢 編輯委員會[編]-서울: 秋丁韓榮春教授 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1993.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고영삼-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 Making justice work/Marshall Freeman Harris, R. Bruce Hitchner, Michael P. Scharf[jt. ed.]-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Press, 1998.
- 내부고발의 논리/박홍식-서울: 나남출판, 1999.
- アジアの檢察 = Prosecution in Asia/敷田稔-東京: 信山社, 1998.
- 正當防衛の根本問題: 社會論理的制限の批判

的考察/朴秉植-東京:明治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 1991.

- 司法年鑑/法院行政處[編]-서울:法院行政處, 1988-1999.
- 위험사회와 성폭력=sexual violence in a risk society/심영희-서울:나남출판, 1998.
- 범죄경력의 발전에 관한 연구:경찰 및 교정기록을 통한 종단적 연구/박철현-서울: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 Antisocial boys/Gerald R. Patterson, John B. Reid, Thomas J. Dishion[jt. author]-Eugene:Castalia Publishing Com., 1992.
- Fear of crime among Korean Americans the Chicago area:a multilevel analysis/Min-Sik Lee-Indiana:Purdue University, 1998.
- 왕따와 은따/강영계-서울:도서출판 답게, 1999.
- 왕따! 이야기/공숙자-서울:계림출판사, 1999.
- 왕따 해결사 서영창 선생님의 왕따 극복하

기/서영창-서울:왕따 당하지 않는 비결 55가지/우리기획[편], 김종상[감수]-서울:삼성출판사, 1999.

- 혹시, 우리아이 왕따 아닐까?/이기문, 김진희[공저]-서울:국일미디어, 1999.
- 바로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단올베우스[저], 이동진[역]-서울:삼신각, 1999.
- 우리반 왕따[저학년편, 고학년편]/한글문화교육원[편]-서울:장백, 1999.
- 盜聽의 이해 = Wiretapping/박춘식, 이임영[공편]-서울:도서출판 그린, 1998.
- Ministry of Justice/Ministry of Justice Japan[ed.]-Tokyo:Ministry of Justice Japan, 1999.
- 法務總合研究所 研究部報告/法務總合研究所[編], 1997-1999.
-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육성방안/한국여성개발원[편]-서울:한국여성개발원, 1999.

통권 제53호(1999년 5/6월호) 현상퀴즈 당첨자 및 정답

총 42통의 응모엽서 중 정답은 24통으로 정답자 가운데 엄정한 추첨을 거쳐 4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첨자>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09 김혜란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6-4 김진명
- 군포시 당동 730 만도BD 3층 유주형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807-10 서태석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서상품권)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금	강	산		고		뺑	소	니
단		신	체	검	사		문	
현	미		내		오	음		공
상		일	수	놀	이		숙	칭
	수		정		십	리		회
이	화	장		수		서	리	
산		패	거	리	정	치		관
가	산		제		수		휴	가
죽		무	도	회		째	즈	

● 도서회원제 안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법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폭넓게 보급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 구분 및 연회비

- 일반 : 40,000원(98년 연구보고서 중 10종)
- 기관 : 70,000원(98년 연구보고서 중 20종)
- (※ 1998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참조)

2.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 송부 및 회비를 은행에 납부

3. 회비납부

- 지로구좌 7528145(형사정책연구원)
- 국민은행 814-25-0002-582(형사정책연구원)

4. 회원에 대한 특전

- 형사정책연구(계간), 형사정책연구소식(격월간), 세미나자료집 무상으로 우송
- 연구원 도서실의 자료열람 이용
- 세미나 초청
- 기발행된 연구보고서 10부 이상 구입시 30%할인

5. 가입문의

137-140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팀
TEL 02-571-0363, FAX 02-571-7488
인터넷홈페이지 : www.kic.re.kr

1998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과 그 대책
- 허위·과장광고의 현황과 대책
- 다단계판매의 실태와 대책
-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 법조계 부조리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AIDS와 관련된 형사사법 문제와 대책
-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부정부패의 사회문화와 개선방안 모색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동향
-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그 통제방안
-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방안 연구
- 각국의 몰수제도
-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회원가입 신청서 및 목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송하여 드립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1.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
4. 날씨를 예보하기 위하여 구름의 위치 등 나타난 지도
6. 팔짱만 끼고 바라만보고 있다는 뜻
7. 축구에서 한국은 K○○, 일본은 J○○
8. 사업에 자금을 출자하는 비용
10. 동물중에서 밀림의 왕자
12. 지난 대선에서 국세청을 동원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
15. 전문적으로 고장난 것을 고치는 사람
17.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부터 해를 입은 사람
18.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신
19.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집
21. 대나무나 싸리나무 등으로 둥글고 속이 깊게 엮어 만든 그릇

23. 국제연합의 영문이니셜
24. 전 전 대통령을 줄여서 칭할 때

<세로열쇠>

2. 김우중 회장은 어느 단체의 회장?
3. 식수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4. 은행이나 법인 등이 하는 투자
5. 으스스한 곳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빛
9.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중에 ○○산부인과
10. 뜻밖에 일어난 일(살인○○, 폭행○○ 등)
11. 대체로 신입사원들은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죠
12. 작은 물건을 만드는 일로 잔손이 많이 가는 수공
13. 모든 것은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옴
14. 물로 인한 피해를 원래대로 복귀하는 일
16. 동아건설은 어느 국가에서 대수로공사를 하고 있죠
19. 주로 트랙 및 필드에서 달리는 경기
20. 경유, 휘발유 등은 어디에서 추출했을까요?
21. 릴레이 경기에서 주고 받는 필요한 막대이름
22. 깊은 바다에는 주로 ○○, 망간 등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응모요령 : 풀이난의 빈칸을 채운 다음 관계엽서에 붙여 연구원 출판실에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정답자 4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 감 : 1999년 10월 9일(토)까지

보내실 곳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실

범죄일반

- 89-01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 89-04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89-07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 90-05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0-07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08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13 유흥업소 주변에서 습관중독성물질 오·남용 실태
- 90-16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관한 연구
- 90-22 낙태죄와 간통죄에 관한 연구
- 90-26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0-23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
- 91-0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91-0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05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91-07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09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 91-13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 91-15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 91-17 약물남용범죄와 약물공급범죄에 관한 연구
- 91-25 한국의 환경오염 및 환경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1-26 사회구조와 범죄
- 91-28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 91-30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 91-32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 92-05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06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12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 92-13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2-14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 92-15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
- 92-28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2-30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 93-05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 93-17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 93-18 도시성장과 범죄
- 93-23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 93-2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 93-31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 94-03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94-08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 94-22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94-25 뇌물죄에 관한 연구
- 94-27 증권범죄에 관한 연구
- 94-30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 95-02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5-04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 95-07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95-08 국내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 95-10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95-14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 95-16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 95-17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95-24 범죄신고 증진방안
- 95-2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 95-27 비행의 조기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 96-01 유엔 범죄방지프로그램
- 96-04 서울시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 96-06 서울시민의 기초질서준수에 관한 연구
- 96-08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관행
- 96-09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 96-11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97-02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
- 97-05 차량절도의 실태와 대책
- 97-0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 97-07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 97-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 97-09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및 대책
- 97-11 컴퓨터를 이용한 몽타주 제작법 개발
- 97-17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 97-1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97-21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64-1996
- 98-02 학원부조리 실태에 관한 연구 - 촌치관행을 중심으로 -
- 98-04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98-06 다단계판매의 문제점과 대책
- 98-07 재중동포에 대한 범죄와 대책
- 98-08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 98-09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
- 98-10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 98-11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98-12 AIDS와 관련된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
- 98-13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 98-14 부정부패의 사회문화와 개선방안 모색
- 98-15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동향
- 98-18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그 통제방안

소년범죄

- 89-0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90-01 소년원교육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 90-09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90-1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연구
- 90-11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 90-12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90-14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 90-20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 90-19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91-08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 91-11 약물남용자의 치료상의 문제점과 대책
- 91-18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91-22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1-23 청소년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1-24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2-08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92-18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92-19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 92-21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 92-2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실태
- 92-31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93-01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 93-03 소년범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93-04 음란물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 94-02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 94-04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 94-07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94-10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4-12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94-15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94-24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연구
- 94-31 소년원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95-01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95-03 소년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95-18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 95-23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성장프로그램
- 95-30 독일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 96-02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예방전략
- 96-03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 96-12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96-14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 방안
- 97-01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교정 보호

- 89-02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89-06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90-27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90-28 교정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91-06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 91-10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1-14 교정시설의 교화활동에 관한 연구
- 91-19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91-27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인참여에 관한 연구

- 91-33 누범수형자의 효율적 관리방안
- 92-03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 92-04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2-09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 92-20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 92-26 누범에 관한 연구
- 92-29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 93-08 강력범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93-1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 93-16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 93-33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94-01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 94-05 수강명령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 94-06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 94-20 재산범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 94-21 재소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 94-23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 94-32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비교
- 95-13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95-19 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 95-31 교도직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95-32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 96-05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96-16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97-03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 97-10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97-14 가석방심사체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98-01 수형자 외부통근제도에 관한 연구
- 98-17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형사법과 형사절차

- 89-05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 89-08 정보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 90-02 수사경찰의 근무실태
- 90-03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 90-04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방안
- 90-06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0-15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 90-17 파출소단위 방법활동 개선방안 연구
- 90-18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 90-21 각국의 구속제도
- 90-24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 90-25 질서위반법
- 91-0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91-04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형사정책연구원